

## 교원업적평가규정

2006.11.01. 제정	2011.01.01. 일부개정	2011.04.18. 일부개정	2011.09.28. 일부개정
2012.01.27. 일부개정	2012.07.22. 일부개정	2012.08.01. 일부개정	2023.05.01. 일부개정
2014.01.01. 일부개정	2024.03.28. 일부개정	2015.01.01. 일부개정	2018.07.01. 일부개정
2019.02.26. 일부개정	2020.03.27. 일부개정	2020.11.01. 일부개정	2021.06.01. 일부개정
2025.04.24. 일부개정	<b>2026.01.01. 일부개정</b>		

<교무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원의 기본 책무인 교육, 연구, 봉사, 산학의 업적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2.1.27.)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업적평가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1.27.)

**제3조(평가 단위기간 및 시기)** ① 평가 단위기간은 당해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으로 한다.  
 ② 평가 시기는 매년 실시되는 정기 업적평가(12월 31일)와 재임용, 승진임용을 위하여 해당 기간마다 실시되는 부정기 업적평가로 구분한다.  
 ③ 재임용 및 승진임용을 위한 업적은 해당 임용기간의 정해진 기간 내 제출된 업적으로 한다. 단, 교육 및 봉사 업적평가의 경우에는 기간 미달로 인하여 평가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19.2.26.)

### 제2장 평가기구

**제4조(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단과대학에는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학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대학 교원 중 전임교원 10명당 1인을 기준으로 최소 1인 이상을 위원장이 추천하여 교무처장을 경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04.18, 2012.8.1., 2013.5.1., 2018.7.1., 2021.6.1.)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 2항의 위원정족수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5.1.1.)

⑥ 단과대학이나 학부가 소속 교원이 부족하거나 자격조건이 불충분할 경우 전공과 관련이 깊은 다른 단과대학의 업적평가위원회와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과대학(학부) 위원의 구성은 각 단과대학(학부) 소속 교원 1인 이상이 포함된 비율로 구성한다.

⑦ **학부교양대학에** 배속된 교원 중 교양 담당 교원은 본인의 원에 의해 그 평가의 소속과 영역(공학/인문사회/예능/자연)을 지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이 정해진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 소속과 영역을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5.1.1., 2019.2.26., **2026.1.1.**)

**제5조(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학교에는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단과대학(학부) 별로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2.26., 2025.4.24.)

③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되,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11.4.18., 2012.8.1., 2018.7.1., 2021.6.1., 2025.4.24.)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⑤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각 업적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단과대학 교원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8., 2012.8.1., 2018.7.1., 2021.6.1.)

1. 교원업적평가제 단과대학별 세부 시행방안의 수립
2. 교원업적 평가보고서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3. 평가자에 대한 자료제출과 보완 요청에 관한 사항 심의
4. 업적평가결과 심의, 보고(교무처장)

②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업적평가 관리의 기본 원칙 수립
2. 단과대학별 업적관리 시행방안 심의
3. 각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교수업적평가결과 심의, 보고(총장)

## 제3장 평가절차

**제7조(평가 자료의 제출)** ① 모든 교원은 자신의 업적을 교원업적평가시스템에 스스로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년 실시되는 정기 교원업적 평가 시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교원업적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된 자료만 평가 대상으로 본다.

③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재임용, 승진임용을 위한 교원업적 평가 시에는 임용 기준일에 따라 재임용은 임용기준일 4개월 전까지, 승진임용은 임용기준일 3개월 전까지 교원업적평가 시스템에 입력한 실적 자료로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위 제3항의 제출 마감일과 임용기준일 사이의 연구업적은 논문게재 예정증명서(출판예정증

명서는 인정하지 않음)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실적으로 인정하며, 재임용업적평가의 경우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이의신청 종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단, 임용기간 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적인정을 취소한다. (개정 2019.2.26.)

**제8조(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사실 확인)** ① 정기업적평가의 경우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교원이 제출한 평가 자료를 심의하여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 보고한다. (개정 2011.4.18., 2012.8.1., 2018.7.1., 2021.6.1.)

② 비정기업적평가의 경우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교원이 제출한 평가 자료를 심의하여 제출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무처장에 보고한다.(개정 2011.4.18., 2012.8.1., 2018.7.1., 2021.6.1.,**2026.1.1.**)

③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해당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2.8.1., 2018.7.1., 2021.6.1.)

**제9조(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보고내용을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심의완료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6.1.1.**)

**제10조(평가결과 통보)** 교무처장은 평가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2.8.1., 2018.7.1., 2020.11.1., 2021.6.1.)

**제11조(이의신청)** 교원업적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평가 자료에 추가 보완사항이 있는 교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기업적평가 및 승진업적평가는 7일 이상, 재임용업적평가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학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6., 2020.11.1.)

**제12조(이의신청에 따른 평가절차)** 재심 신청을 접수한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6.1.1.**)

**제13조(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교무처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를 재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2.8.1., 2018.7.1., 2020.11.1., 2021.6.1.,**2026.1.1.**)

## 제4장 평가방법

**제14조(평가대상 및 구분)** ① 평가대상은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등 평가영역별로 구분하며 단과대학(학부), 학과단위의 업적은 총 합산된 배점 범위 내에서 소속 교원에게 배분한다.

② 재임용, 승진임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5.1.,**2026.1.1.**)

임용 구분	임용직명	학문분야	연간 최소조건			기간 내 최소 조건	
			교육 (평균)	봉사 (평균)	교육 + 봉사	연구(합산)	
재임용	삭제 (2012.7.22.)						
	조교수	인문/사회	72	10	84	연구업적 72점 (제16조의 주저자 점수 40점 필수)	
		자연/공학				상동	
		예능				상동	
	부교수	인문/사회	72	10	84	연구업적 108점 (제16조의 주저자 점수 60점 필수)	
		자연/공학				상동	
		예능				상동	
	교수	인문/사회	72	10	84	연구업적 60점 (제16조의 주저자 점수 30점 필수)	
		자연/공학				상동	
		예능				상동	
	승진 임용	삭제 (2012.7.22.)					
		부교수 승진	인문/사회	80	12	95	연구업적 150점 (제16조의 주저자 점수 100점 필수)
자연/공학			상동				
예능			상동				
교수 승진		인문/사회	82	13	100	연구업적 120점 (제16조의 주저자 점수 90점 필수)	
		자연/공학				상동	
		예능				상동	

※ 전문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 제16조 및 별표 2-1, 2-2에 정한 바와 같음.(개정 2012.1.27., 2013.5.1., 2019.2.26.)

※ 신규임용시 재임용 요건은 직급별 임용요건의 1/2로 한다. (신설 2012.7.22.)

③ 직급 승진 평가 시에는 현 직급기간의 업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승진임용에는 박사학위 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능계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승진임용시에는 산학업적(별표4)분야에서 공학계열은 교수승진시 30점, 부교수 승진시 36 점, 기타계열은 공학계열의 1/2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013.5.1.)

**제15조(교육업적평가)** ① 교육업적의 평가는 별표 1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② 삭제(2015.1.1.)

③ 삭제(2015.1.1.)

**제16조(연구업적평가)** ① 연구업적의 평가는 별표 2-1, 별표 2-2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② 연구실적이 2인 이상의 공동연구실적인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산정비율에 따라 인정한다.(개정 2026.1.1.)

**1. 논문의 경우**

가. 주(교신)저자: 2/(n+2)

**나. 공동연구자:  $1/(n+2)$** **단, 연구참여자 수가 5인 이상일 때에는  $n=5$ 로 함 (n : 연구자 수)****2. 저서 및 기타 연구실적물의 경우:  $1/n$** **단, 연구참여자 수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n=10$ 으로 함 (n : 연구자 수)**

- ③ 재임용, 승진임용의 연구업적은 제14조 제2항의 연구업적 점수와 괄호안의 질적 요건 점수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질적 요건 점수는 전문학술지 주저자(작품발표 포함) 점수를 의미하며, 국제전문학술지 공저자 점수, 국제특허/국내특허 등록 점수를 포함한다.(개정 2013.5.1., 2019.2.26.)
- ④ 전문학술지 주저자(제1 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경우 교신저자와 제 1저자가 모두 본 대학교 교원일 경우 모두 주저자로 인정한다.(개정 2026.1.1.)
- ⑤ 전문학술지에 해당하는 작품발표는 예능계 연구업적(별표2-2) 중 배점 10점 이상의 발표에 한한다. (개정 2019.2.26.)
- ⑥ 최초 임용 1년 후 재임용 평가는 조건을 소요 연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
- ⑦ 업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본교 임용일 이후의 실적에 한하여만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단, (구)동명정보대학교의 연구실적은 승계하여 인정한다.
- ⑧ 모든 연구 실적물은 평가 대상기간 내에 발행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 ⑨ 임용기간 이후에 추가제출 된 전 임용기간내의 연구실적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⑩ **(삭제 2026.1.1.)**

**제17조(봉사업적평가) ①** 봉사업적의 평가는 별표 3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② (삭제 2015.1.1.)

**제17조의2(산학업적평가) ①** 산학업적의 평가는 별표 4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신설 2011.01.01)

- ② 산학업적 평가에서 획득한 점수는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등 평가영역별로 배분되어 합산된다. (신설 2011.01.01)
- ③ 별표4의 산학업적 평가요소의 평가영역 배분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1.01.01)
1. 산학연구는 연구업적으로 배분한다.(개정 2012.1.27)
  2. 산학교육은 교육업적으로 배분한다.(개정 2012.1.27, 2013.5.1.)
  3. 산학봉사는 봉사업적으로 배분한다.(개정 2012.1.27, 2013.5.1.)

**제18조(평가결과활용)** 교원업적 평가결과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활용한다.

1. 성과급 지급
2. 연구장려금 지급
3. 우수교원 선발
4. 연구년제 교원 선정
5. 재임용, 승진임용

**제19조(평가면제 및 대체 산정) ①** 해외파견, 연수 및 연구년제에 해당되는 교원의 교육 및 봉사업적은 평가시기 이전 2년간의 평균점수로 산정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는 평가시기 직전의 평균점수로 산정한다.

② 주요 보직자(대학원장, 학장, 처장, 산학협력단장)는 성과급 지급, 우수교원 선발, 연구년제 교원 선정에 한하여 총장이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요 보직자는 평가대상 교원 총수에서 제외한다.

**③ 재임용 기간내 장기휴직 등의 사유로 업적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임용 및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6.1.1.)**

## 제 5 장 기타

제20(기밀 유지) 평가결과는 본 대학교가 정한 활용목적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1조(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대학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위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까지의 재임용, 승진임용 대상자의 평가는 (구)동명정보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적용한다.

② 교육, 봉사업적 평가는 2006년 이후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본 규정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평가대상 기간 내의 교육, 봉사업적 점수로 간주한다.

③ 본 규정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임용의 대상이 되는 교원의 업적 평가기간이 본 규정 시행일 전후로 나뉘는 경우에는 본 규정 시행일 이전 기간의 실적에 대하여는 (구)동명정보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시행일 이후 기간의 실적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연구실적 및 취득점수를 인정하되, 해당 임용요건의 점수는 양 규정의 기준점수를 그 소요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이때 해당 임용요건의 점수는 각 항목별 점수를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하여 합산한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자리까지의 점수를 그 기준점수로 정한다. 제출된 업적평가 점수의 산정방식도 상기방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7조 3항의 적용에 있어 2007년도 업적평가에 한하여 업적평가 제출 시기를 재임용은 임용기준일 3개월 전까지, 승진임용은 임용기준일 2개월 전까지로 한다.

⑤ (구)동명대학 교원의 연구업적은 제16조 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3월 1일 이후의 (구)동명대학 상위 직급기간내의 연구실적을 합산하여 승진임용 시 적용하며, 재임용시의 연구업적에 대하여는 2006년 3월 1일 이후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교육, 봉사업적은 제16조 7항 및 부칙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2006년도 정기업적평가는 본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17조의 2, 별표 1, 별표 2-1, 별표 3, 별표 4는 2011년 정기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 제5항은 2012년 4월 승진부터 적용하며, 연간 기준 점수는 2011년부터 기산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전환하는 교원의 최초 재 임용은 전임강사 임용기간 만료일에 하며, 재임용 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임용직명	학문분야	연간 최소조건			기간내 최소조건
		교육 (평균)	봉사 (평균)	교육 + 봉사	연구(합산)
조교수	인문사회	55	7	64	연구업적 40점 (전문학술지 A급(작품발표 포함) 주저자 또는 국제저명학술지로 20 점 필수)
	공학				상등
	예능				상등

②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전환하는 교원의 부교수 승진소요기간은 전임강사 재직기간을 합산 하여 6년을 적용하고, 승진기준은 제14조 제2항의 표에 의한다.

③ 이 규정 개정일 현재 재직 중인 조교수의 부교수 승진소요기간은 4년으로 하며, 승진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임용직명	학문분야	연간 최소조건			기간내 최소조건
		교육 (평균)	봉사 (평균)	교육 + 봉사	연구(합산)
부교수 승진	인문사회	57	8	67	연구업적 100점 (전문학술지 A급(작품발표 포함) 주저자 또는 국제저명학술지로 70점 필수)
	공학				상등
	예능				상등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항은 2012학년도 학제개편에 따라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업적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4년 3월까지의 재임용, 승진임용 대상자의 평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2013년도 정기업적평가는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 내용은 2013년도 정기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 내용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업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주당책임일수’, ‘교수 홈페이지 활용도’ 및 <별표 3>의 ‘보직활동’ 항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업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2026년 4월까지의 승진임용 대상자의 평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업적 평가에 2026년 업적이 산입되는 2026년 9월 재임용부터 본규정을 적용한다.

② 교육, 봉사 업적의 재임용, 승진 연간최소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전 업적은 종전의 규정 내 연간최소조건을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업적은 본규정의 연간최소조건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개정에 따른 연구업적 중 논문 및 저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업적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교육업적 평가 (개정 2011.01.01., 2013.5.1., 2015.1.1., 2019.2.26.,2020.3.27., 2020.11.1., 2021.6.1.,2026.1.1.)

평가요소	평가항목	최대배점	평가척도	비고	
수업	책임학점	30	▶연간책임학점 기준 충족시 18점(단,1학점 초과:+1점/미달:-2점) → 학부 수업으로 연간책임학점 미 충족 시 대학원 수업 학기당 3학점까지만 책임학점으로 인정 → 학부 수업 연간책임학점에서 3학점을 제외한 책임학점 충족시 대학원 수업 전체 책임학점 인정(논문지도 제외)	연간	
	교과목 인증제 참여	6	▶ 교과목 인증제 인증을 득한 교과목 1. TU 인증 교과목 2점 2. TU+ 인증 교과목 3점 ▶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교과목으로 연간 3과목으로 제한 ▶교과목 인증제 인증 이력이 있는 교과목의 경우, 교과목표 혹은 교수방법에 변경사항이 있어야 신청 가능	학기	
	3학기제 및 계열세미나 참여	2	▶ 3학기제 참여학과 교수 전체 : 1점 ▶ 계열세미나 책임교수 : 개발 1점, 운영1점 → 교양 계열세미나 포함		
	교과목 개발 참여	2	▶교과목 개발 심사를 통과하고 교무처 승인을 득한 교과목 : 2점 → 교양교과목 개발 포함 ▶교양교과목 개편연구 참여:1점		
	담당 교과목 수	10	▶1과목당 2점(멘토링교과목 제외)		
	멘토링과목 수	1	▶멘토링교과목은 3개과목 이상부터 1교과목 당 0.5점		
	대규모 강좌	2	▶55명 이상이 수강하는 교양 대면 강좌 운영, 과목별 1점 ▶학기별 교원의 대면수업 수강 학생수 200명 이상인 경우 1점		
	주당책임일수	▶일반교원(4일)	7		▶주당책임일수 기준 충족 시 학기당 5점, 1일 초과:+1점/미달:-1점 → 대학원 수업일수 포함, 야간수업 별도 1일 계산 ※ '보직교원 연간 감면학점' 기준의 “가” 군 “나” 군 보직자는 주당책임일수 기준 미달시 학기당 3점 부여
	외국어 전용강좌		6		▶1과목당 3점 →어학과목 및 외국인대상교과목 제외 →국내생 대상 외국어전용 강좌로 수업계획서에 명시되고 영어로 수업진행한 경우만 인정
	해외협약대학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양교육과정 포함)		2		▶ 3+1, 2+2 외국인 전용 별도반(2중 언어과정) 운영 : 각 1점 - 입학생이 있어 과정이 운영되는 경우 학년도 당 1점 ▶ 프랜차이즈 교육과정(국제교류팀 인정 과정)
	수업평가결과		15		▶상대평가(상위10%:15점/20%14점/30%:13점/40%:12점/50%:11점/60%:10점/70%:9점/80%:8점/90%:7점/하위10%:6점) ▶수업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6점 부여
	수업계획서작성/CQI		4		▶담당 교과목 수업계획서 입력 2점/CQI 전산입력 2점 ▶수업계획서 전체과목 입력시 2점, CQI 전체 입력시 2점 ▶ 수업계획서 미입력 시 강좌 당 - 2점 감점 ▶ 교과목 CQI 보고서 미입력 시 강좌 당 - 1점 감점 ▶ 입력 기준 - 수업계획서 입력 기준: 각 항목(1. 수업개요, 2. 수업목표, 7. 주차별 수업계획>학습목표, 7-1 주차별 교시>학습내용)별 20자 이상 입력 - 교과목 CQI 보고서 입력 기준: 각 항목(전년도 개선 요구 반영>반영사항, 종합분석 및 개선계획)별 20자 이상 입력 - 입력 기준일자: 지정 기간
	전자출석부 입력		1		▶건당 1점 →중간교사 이전 전산입력
LMS 활용도		1	▶30건 이상 입력시 1점 → LMS 플랫폼 “가의 콘텐츠” 메뉴 항목에 등록된 건수만 인정		

융합교육	자기설계 교육과정 지도	3	▶자기설계전공 지도학생 1인당 2점 ▶자기설계모듈 지도학생 1인당 1점	
	다전공지도	1	▶타 전공 학생의 복수전공 멘토가 될 때 학생 1인당 0.5점 → 학기별 멘티 학생상당 2회 이상 입력 시 인정	
	연계전공, 융합전공, 탐색모듈 개설 및 운영	2	▶연계전공 개설 및 운영 시 학과 교원 전체에게 1점부여 →신청자가 있어서 운영되는 경우에 인정 → 평가대상 학기에 해당 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이 있는 경우(1학기 4.1.기준, 2학기 10.1.기준) ▶탐색모듈 개발 및 개설 담당 교원에게 1점 부여 →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되는 경우에 인정	
교양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개설 및 운영	2	▶교양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개발 : 1점 ▶교양 마이크로디그리 개설 및 운영시 책임교수에게 1점 부여 →학부교양대학에서 매년 지정한 책임교수만 인정 →신청자가 있어 운영되는 경우에 인정(1학기 4.1, 2학기 10.1 기준 일)		
교수법 개선	교수법 수강	5	▶교내 교수법 특강 참여 건당 0.5점	
	가상강좌 개발	2	▶가상강좌 개발 시 과목당 2점 (KOCW, K-MOOC 등)	
	수업컨설팅 참여	2	▶수업동영상 촬영 후 컨설팅서비스 참여 시 2점 ▶수업평가결과(7.6미만) 강의컨설팅 대상자가 컨설팅 미참여시 학기당 -1점 감점	
	TU-CIM(수업혁신법) 개발/운영	2/2	▶교무처에서 인정하는 TU-CIM(수업혁신법) 개발 1건당 2점(PBL, 융합 교과목, 플립러닝 등), 운영 1건당 1점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제외	
학생지도	공인 국제/전국 경연대회 수상 및 참가지도	6	▶1건당 2점 →교외의 공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전국규모 경연대회에서의 입상(입선제외) 이상 실제 지도한 교원에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1건당 0.5점 →교외의 공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전국규모 경연대회 참가 지도 →증빙자료 : 지도교수 명기된 참가신청서 및 경진대회 참가 내부 기안문(지도교수 명기)만 인정	연간
	국가고시합격 지도	3	▶지도학생(대학원생 포함) 1인당 1점 →국가 또는 정부 산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합격 또는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대학원생 학위 논문 지도	10	▶내국인 논문지도: 석사 2점, 박사 4점(1명당) ▶외국인 논문지도: 석사 3점, 박사 6점(1명당) →평가기간 내 학위취득자의 학위논문지도에 한함	
	학생행사지도	3	▶1건당 1점 →학생이 주체인 학생행사로 교수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만 인정 →행사 단순참여, 수업 및 교육 목적의 행사 등은 인정 제외	
	학생 상담활동 지도	10	▶1건당 0.1점(업적평가 기한 내 t-UP 입력자료만 인정)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학생동아리, 창업동아리, 학술모임, 취업반 등)	10	▶1M당 1점(교무처에서 인정한 경우) →t-UP에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함	
	학생창업지도	2	▶1건당 2점 →교원의 창업 지도를 통하여 지도학생이 창업한 경우(지도학생 사업자 등록증 제출)	

<별표2-1> 연구업적평가 (개정 2012.1.27, 2013.5.1., 2019.2.26., 2026.1.1.)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평가척도	비고	
저서	전문학술저서	국제 40 국내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전공분야의 연구저작물로 일반에게 공개된 것과 ISBN이 부여되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등록된 것에 한하여 인정</li> <li>▶국제전문학술저서: 외국어로 간행된 전공학술저서로 참고문헌이 갖추어져 있는 저서</li> <li>▶국내전문학술저서: 참고문헌이 갖추어져 있고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이 등록된 한국어로 저술된 전공학술저서로 200페이지 이상의 전공서적과 개론서를 포함한 저서</li> <li>▶기타서적: 전문학술저서 및 번역 이외의 서적 →저서: 교육부 편찬 1종 도서 등 정부 및 공공단체에서 발행한 학술서적 및 수험서, 매뉴얼, 단편번역, 사전, 교양서적, 편저, 200페이지이하의 전공서적 등</li> <li>→편저: 자신의 저작물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의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를 모아 단행본 형태로 출간한 서적</li> <li>▶전문학술저서 개정판: 해당항목 배점의 20%를 인정. 다만, 개정판의 저자로 신규 참여하는 경우에는 초판으로 인정</li> <li>▶상/하권 등 시리즈물은 개별 출판물로 각각 인정</li> </ul>		
	번역서	20			
	기타 서적(편저 포함)	10			
논문	국제전문학술지	SSCI, A&HCI, SCIE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논문: 소속 학과(학부)의 전공영역에 해당되는 논문. 또한 본 대학교에 재직 중 박사학위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 해당 박사학위논문을 국내전문학술지로 인정</li> <li>▶국제전문학술지: SCIE, SSCI, A&amp;HCI에 등재된 학술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된 SCOPUS 정규논문</li> <li>▶SCIE, SSCI, A&amp;HCI, SCOPUS에 게재한 논문으로 학술지의 권,호,페이지가 부여된 오프라인 발행일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온라인으로만 출판되는 학술지에 한하여 온라인 발행일을 적용</li> <li>▶국제전문학술지 평가등급은 학술지 평가기관의 발표시점이 아닌 등재기간에 따라 해당 학술지의 평가등급을 적용 →SCOPUS 정규논문으로 인정되는 문서종류(4종): Article, Review, Erratum(Errotum 이전의 원 논문이 정규 논문으로 기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인정), Book Chapter (SCOPUS 저널목록에서 검색되고, 동료심사를 거쳤으며, 저널형식(Vol.No.정기발행)을 갖춘 경우에 인정) →국제일반학술지: ESCI에 등재된 학술지, 외국 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와 국제전문학술지에 속하지 않은 국제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후보포함)된 학술지 (국내에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는 제외) →국내일반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외에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li> <li>▶국내의 전문학술지 논문은 KRI 검증이 되어야 하고, 논문이 검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술지 발간 학회에 직접 문의 후 정규논문 인정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함</li> <li>▶해외대학 소속교수 및 연구소 소속 연구원과 공동연구로 SCOPUS이상 학술지 등재시 추가 연구점수 부여 → 논문점수 산출시 해외 공동연구자 1명 감원 후 산출</li> </ul>	
		SCOPUS 정규논문	30		
	국제일반학술지		15		
	국내전문학술지		15		
	국내일반학술지		8		
	해외 공동연구		10		
학술논문발표 (Proceeding)	국제 주요 학술대회 발표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 주요 학술대회 발표(Proceeding): →Proceeding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되고 외국인 논문발표자가 1/3이상이거나 5개국이상인 학술대회(Conference) →Conference Proceeding 게재논문으로 Publish되는 것을 의미함</li> <li>▶국내 학술대회 발표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포함)학술지의 학회에서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학술회의 및 학술단체에서 주관하는 워크숍 논문발표와 국제 주요 학술대회발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국제학술대회발표</li> <li>▶기타 학술대회 발표 →국내의 지방규모 학술대회 또는 국제 주요 학술대회와 국내 전국 규모 학술대회에 해당되지 않는 워크숍, 세미나 등에서의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를 포함(논문,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등의 발표 자료를 인정함) →타대학교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학술대회, 워크숍, 세미나 등에서 논문발표는 인정하지 않음</li> </ul>	연간 최대 20점
	국내 학술대회 발표	전국규모	4		
		기타	2		
학술활동	학술대회	국제/국내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연자, 좌장, 토론자, 연설자, 사회자 →한국연구재단에 기관등록된 국내·외 공인학회 등 학술 단체 또는 국제연구기관의 주관(주최)하는 학술대회에 한함</li> </ul>	연간 최대 6점

<별표2-2> 연구업적평가(개정 2019.2.26., 2026.1.1.)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평가척도	비고			
미술, 영상, 디자인  건축설계, 도시설계, 조형물, 스포츠	개인전 및 단체전	개인전	국제/국내외(30/15)	▶개인전 및 단체전에서 ‘국제’ 라는 의미는 국제적 성격의 공인단체(국제비엔날레, 국제디자인전, 국제패션쇼, 국제건축전, 국제아트페어, 국제박람회, 국립미술관)에서 초청 또는 주최하는 국제적 개인전이나, 5개국이상 참여 단체전시회를 말함(단, OECD가입국가 및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에 한함). ‘국외’ 라는 의미는 외국의 공인된 화랑 또는 미술관에서의 작품발표에 한함 →개인전 및 2인전은 창작품으로 하며 작품의 수는 각 장르별 최소 20점 이상이어야 하며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이어야 함 →개인전 및 2인전은 공인된 화랑(한국화랑협회 등록), 국가나 관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해당국가의 화랑협회 또는 국가기관에 등록된 공인된 화랑, 미술관으로 한정하며 (1)전시확인서, (2)전시장 또는 전시기획사와의 계약서, (3)작품발표는 전체 작품이 게재된 도록(또는 팸플릿)을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단체전은 전체 작품이 게재된 도록(또는 팸플릿)을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2인전	국제/국내외(20/10)				
		단체전	국제/국내외(7/3)				
		스포츠 대회 선수 또는 지도자	개인전			30/15/10	▶교원이 국가대표로 해당 대회 선수 또는 지도자로 출전·참가할 경우 인정 → 개인전: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30점 / 아시안게임: 15점 / 각종 국제대회: 10점 → 단체전: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10점 / 아시안게임: 7점 / 각종 국제대회: 3점
			단체전			10/7/3	
			개인전/단체전			7/3	
	기타	15/10/5	▶교원이 국제심판 자격취득(15점), 교원이 세계신기록(10점) 및 한국신기록(5점)을 작성하였을 경우 인정 → 동일종목의 자격취득은 1회에 한하며, 신기록은 각종 협회가 인정한 것에 한함				
	스포츠 대회 수상	개인전	20/10	▶교원이 해당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20점 / 각종 국내·외 대회: 10점 → 1등(우승) 100%, 2등(준우승) 80%, 3등(3위) 50% 점수 반영			
		단체전	10/5	▶교원이 해당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10점 / 각종 국내·외 대회: 5점 → 1등(우승) 100%, 2등(준우승) 80%, 3등(3위) 50% 점수 반영			
	공모전	국제 규모	1등상(30/20)	▶공모전에서 ‘국제규모’ 라는 의미는 한국을 포함한 국외 국가의 공인단체에서 참가대상을 국제적으로 기획 또는 현상 공모하여 주최하는 전시회 또는 현상설계에 출품하여 수상한 것을 말함(국제미술대전, 국제디자인대전, 국제공예대전, 국제인테리어대전, 국제건축대전, 건축 또는 조형물 국제현상설계). UIA인증 국제공모전의 경우 연간 최대 30점 인정			
			특선 이상(15)				
			입선(7)				
		국내 규모	1등상(7)			▶공모전에서 ‘국내규모’ 라는 의미는 개최 지역과 관계없이 공인단체에서 참가대상을 국내(해당 시도 및 전국규모)로 정하여 기획 또는 현상 공모하여 주최하는 전시회 또는 현상설계에 출품하여 수상한 것을 말함	
	특선 이상(4)						
	입선(2)						
기타	전문지 게재 완공건축물(7)	▶공모전을 거쳐 완공된 건축물 가운데 건축전문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것으로서 소속과 성명, 역할이 명시된 것에 한함(참여자 다수일 경우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6조제2항의 공동 연구실적 배분 기준에 의함)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연구 전시	10	▶연구전시를 증빙하는 기증서 또는 연구전시확인서를 제출한 것에 한함(전시작품에는 본인의 소속과 성명이 표시되어야 함) →동일기관에 다작을 제출한 경우에는 1기관 당 1편만을 인정 →공공기관은 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 및 공사, 공단을 의미	연간 최대 20점				

<별표 3> 봉사업적 평가 (개정 2011.01.01, 2013.5.1., 2014.3.28., 2015.1.1., 2019.2.26., 2020.3.27., 2026.1.1.)

평가요소	평가항목		최대배점	평가척도	비고	
교내봉사	보직활동	가군, 나군	30	▶ '보직교원 연간 감면학점' 기준에 의하되, 직무대행 및 업무취급도 동일군으로 인정 →36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중복인정 불가 <삭제>		
		다군	25			
		라군.마군	20			
		책임교수	10			
	<삭제>					
	홈페이지 관리 책임교수 및 취업전담교수		8	홈페이지 관리전담교수 및 취업전담교수 →월 기준으로 1달에 1점 배점		
	교내 위원회 활동		6	▶위원회 당 가급: 4점, 나급: 3점, 다급: 2점 →36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가급,나급은 매년 정기업적 전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위원회 가,나급 확정 및 조정 →다급: 가급,나급 이외의 위원회 →당연직 및 개인 연구프로젝트는 제외 →당해 연도에 한하여 동일사업으로 중복하여 점수를 인정받을 수 없음		
	TFT 활동		8	▶팀당 4점		
	장학금, 발전기금 기부 및 유치	현금	30	▶현금: 100만원당 3점, 현물: 100만원당 1점 →100만원 미만도 금액에 비례하여 계산 →순수기부(유치)만 인정하며 관련 부서업무와 관계된 기부(유치)는 불인정. 다수가 기부(유치)를 하였을 경우 기부금액별로 점수 적용함. 단, 기부(유치)금액에 세부기부(유치)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점수를 균등 적용 →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한 발전기금 포함		
		현물				
	입시지원 활동		10/5	▶가급(입학부서 주관 입시활동) : 회당 1점 →가급: 입학설명회, 교묘방문, 특강 등 입학 및 홍보 활동 →입학사정관 활동 (1개월당 1점) →입학주관부서에서 인정한 경우만 인정 ▶나급(단대(모집단위) 주관 입시활동): 회당 0.5점 →나급:단대 및 학과차원의 편·입학 홍보활동 →대학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만 인정		
	신입생 및 편입생 등록생 유치		10	▶등록생 1명당 1점 ▶등록후 다음학기까지 등록유지 시 인정		
	교수회의 참석		4	▶건당1점 ▶확대교수회의, 교수회의 참석		
	연구유리교육 참석		2	▶건당1점 ▶본 대학교에서 주최, 주관한 교육에 한함		
졸업생 행사		3	▶재학생과 졸업생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시 건당 1점 ▶관련 기안문 또는 결과보고서 증빙(참여교수 명기시 인정, 동문회 포함)			
교내 언론 활동	교내신문 및 동명포럼 기고, 작품 게재	4	▶건당1점 →기명, 무기명 기고 포함. 단, 무기명일 경우 신문방송국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동일건 중복 인정 불가			
교외봉사	국제공인 학회 및 협회, 한국연구재단 등록학회, 전국규모 예·체능단체	회장, 이사장 등 대표자	6	▶36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국연구재단 등록학회: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회의 지역회(지회, 분회 등)포함 →전국규모 예·체능단체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첨부 시 인정 <삭제>	연간 최대 15점	
		임원(이사진), 편집위원	3			
	전국규모 이상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및 학술위원장		2	▶회당2점 →전국 규모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첨부 시 인정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지원 활동		4	▶36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공공기관: 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 및 공사, 공단을 말하며 견적허가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임명(위촉)을 받은 경우에 한함 →민간기관: 법인에 한하며 견적허가를 받아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명(위촉)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36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360일 기준 건당 2점 →견적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 기관 지원활동으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임명(위촉)을 받은 경우에 한함(위촉장내 위촉 기간 일할 계산) →임명장(위촉장) 증빙제출시 인정(30일이상의기간만 인정)		

평가요소	평가항목	최대배점	평가척도	비고
	국가고시 및 국가자격시험 (심사, 평가, 출제, 채점 등의 위원)	4	▶국가고시 및 국가자격시험: 회당 2점 ▶국가고시 및 국가자격 시험만 인정(민간자격증, 공무원 채용 시험 등은 미인정)	
	기타 교외봉사	5	▶건당 1점 →1365 및 VMS에서 발급된 사회봉사활동확인서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부서에 제출후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교외 언론 활동	5	▶건당 1점 →학교 소속이 표시된 공중매체에 한하며 인쇄매체의 경우 기고 형태의 언론활동에 한함. 방송매체의 경우 토론자, 사회자등으로 출연했을 때의 활동을 말하며 단순 인터뷰는 제외 →동일건 중복 인정 불가	
수상	훈장, 대통령표창, 국제기구 및 국제조직의 기관장상	10	▶건당 10점	감사패(장), 공로패(상) 등은 건당 2점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상		▶건당 8점 →국가기관장상: 국무위원급 이상	
	이사장상, 총장상		▶건당 6점	
	기타 기관장상		▶건당 4점 →캡스톤디자인 관련 수상은 제외	

<별표 4> 산학업적평가 (개정 2012.1.27, 2013.5.1., 2014.1.1., 2015.1.1., 2019.2.26., 2026.1.1.)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평가척도	비고
산학연구	특허 등록 및 출원	국제	60/30/6	▶등록(인문사회, 예체능)/등록(자연, 공학)/출원 → <u>학교(산학협력단)가 특허권을 소유(단독 또는 공동)하는 경우에 한함</u>	
		국내	30/15/3		
	실용신안/디자인/상표		5	▶ <u>학교(산학협력단)가 권리를 소유(단독 또는 공동)하는 경우에 한함</u>	
	기타 지식 재산권		2	▶ <u>학교(산학협력단)가 권리를 소유(단독 또는 공동)하는 경우에 한함</u>	
	기술이전(100만원당)		8/4	▶ <u>산학협력단 회계에 입금된 것에 한함(인문사회, 예체능/자연과학, 공학)</u>	연간 최대 120점
	교외 연구비 과제신청 건수		건당 2점	▶ <u>지원기관에 등록된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한 교외 연구비 과제신청 건수</u> → <u>지원기관 홈페이지, 나라장터, 출연기관 등에 등록된 공고이어야 하며, 산학협력단을 통해 신청한 과제에 한함(산학체연구비는 제외)</u> → <u>과제책임자에 한해 계열 구분 없이 신청 건수로 인정(공동연구자는 제외)</u>	연간 최대 10점
	교외 연구비 수주액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자연, 공학계 (각100만원당)	2/1	▶ <u>연간 수주액(n은 용역 수행하는 본교 전임교원 수)</u> → <u>과제책임자: 연구비별 점수×2/(n+1)</u> → <u>공동연구자: 연구비별 점수×1/(n+1)</u> ▶ <u>연간 수주액 산출시 다른 계열 교원과 공동 연구 시 과제책임자 계열 기준 적용</u>	연간 최대 100점
	산학체 연구비 수주액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자연, 공학계 (각100만원당)	2/1	▶ <u>교외연구비 수주액(R&amp;D)</u> <u>정부부처, 정부출연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R&amp;D과제를 말하며, 인력양성교육사업 및 재정지원사업내의 연구과제(연구개발비)는 포함되지 않음. 산학협력단 회계(교비)로 입금된 것에 한하고 교비대응자금을 제외한 수주액을 산정. 교양영역교원의 영역은 개인별 해당 전공으로 산정</u> ▶ <u>산학체연구비 수주액</u> <u>교외연구비(R&amp;D)를 제외한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용역과제 연구비를 의미함. 단, 외부 지원기관의 연구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학체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는 제외함</u> ▶ <u>과제비가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인정하고, 본교 참여교원 수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전임교원에 한하여 산정</u>	연간 최대 100점
	대학 정책연구 집필 활동		40/20/10	▶ <u>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대학기관평가인증 등과 같은 대학 전체의 평가인증과 관련한 집필총괄부서에서의 활동을 말하며 해당여부는 집필총괄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등으로 결정함</u> → <u>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등급에 따라 인정(가급 40점, 나급 20점, 다급 10점)</u>	
	재정지원사업 수행(산학공동연구 제외)		40/25/15 /10/8	▶ <u>연간사업비</u> → <u>50억 이상 / 30억 이상 / 10억 이상 / 5억 이상 / 5억 미만</u> → <u>사업책임자: 사업비별 점수×1.5</u> → <u>사업책임자는 {사업비별 점수×(n-1)}를 사업참여자에게 배분(n은 사업수행 교원수, n이 10이상일 경우 10로 계산)</u> ▶ <u>재정지원사업(R&amp;D사업 제외)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교원에게 점수를 분배하며 사업금액은 교비대응자금을 제외함. 1차년도에 한하여 집필자와 수행자가 동일할 경우 산학봉사와 산학연구에서 중복하여 점수를 인정함(국고지원에 의한 인력양성사업은 재정지원사업으로 인정)</u> ▶ <u>재정지원사업내의 연구과제(연구개발비)는 산학공동연구비 수주액으로 보며 주지자 점수로는 인정되지 않음</u> ▶ <u>과제비가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인정하고, 본교 참여교원 수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조교수(기간제)전임교원에 한하여 산정</u>	연간 최대 60점
현장실습지도		2/1	▶ <u>자율현장실습: 학기당 지도 학생 1인당 장기 2점, 단기 1점</u> → <u>현장실습을 실제 지도한 교원에 점수 부여</u>	연간 최대 20점	
		5/2	▶ <u>표준현장실습: 학기당 지도 학생 1인당 장기 5점, 단기 2점</u> → <u>현장실습을 실제 지도한 교원에 점수 부여</u> → <u>Co-Op현장실습 지도(W2learn, 워털루형 등) 포함</u>		
			<삭제>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평가척도	비고	
산학교육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계약학과	2	▶최초 계약 시 2점, 계속 운영 시 연간 2점(36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연간 최대 15점	
		산업체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	5/2	▶최초 계약 시 5점, 계속 운영 시 연간 2점(36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소속교수 전원에게 부여 →기업맞춤형주문식교육과정으로 산업체와 연계협약을 체결한 건에 한함		
				<<삭제>>		
	캡스톤디자인지도		2	▶개설운영 건당(RISE사업단에서에서 인정한 과제)		
	취업방문		0.5	▶1회당 0.5점 ▶최대배점 5점		
				<<삭제>>		
	해외인턴십 지도		3	▶해외인턴십 3점(실제 지도한 교원에게 부여)		
	산학연클러스트과정		2	▶1회당 2점, 참여교수 전원 점수부여, 강좌 최소 참석인원 15명		
	산업체 재직자 교육		2	▶1회당 2점 부여		
제품개발학기제 운영		2	▶제품개발학기제 운영시 운영 교원에게 2점 부여			
현장수업지도(교외수업, 산업체 견학)		0.5	▶현장수업지도 건당 0.5점 ▶최대배점 2점			
산학봉사	대외협력 체결 및 Open UIC 참여기업 유치		1	▶건당 1점, 최대배점 3점 →동일기관 중복인정이 불가하고 학과단위로 평가하되, 소속 교원에게 동일 한 점수를 부여(대학차원의 협력의 경우에도 협력체결의 주체가 학과로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실적으로 인정)	연간 최대 30점	
	기술전시회 참여		1	▶건당 1점, 최대배점 4점 →전국 규모의 기술엑스포, 산업대전, 전시회 등에 학교 소속으로 참여한 것을 인정(전국 규모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역과 계층을 제한하거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운영		10	▶1건당 5점 부여		
	학교기업, 벤처 및 실험실	창업	10	▶창업: 건당 10점, 운영: 건당 5점 - 대표자만 인정(사업자등록증에 본인이름 명기)		
		운영	5			
	재정지원사업 계획서 집필(유치) 활동		15/10/8	▶사업유치 성공 시(건당 배점) →10억이상: 15점 →10억미만 5억이상: 10점 →5억미만: 8점 →사업책임자: 사업비별 점수x1.5 →사업책임자는 {사업비별 점수x(n-1)}를 사업참여자에게 배분(n은 사업수행교원수, n이 10이상일 경우 10으로 계산) ▶총장의 결재를 득한 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한함		
		7/5/3	▶사업유치 실패(건당 배점) →10억이상: 7점 →10억미만 5억이상: 5점 →5억미만: 3점 →개인별 동일 점수 부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한함			

<별표 5> 교육·봉사사업적 연차별 기준 (삭제 2026.1.1.)